

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제안 설명

이창섭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이창섭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건의안은 현재 법률상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“개인형 이동수단”(personal mobility)의 경우 현행법상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로 분류되어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개선하고자 “개인형 이동교통수단”을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가 아닌 별도의 이용수단으로 구분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